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182)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제11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제16조 및 제17조), 주거지원(제20조), 정착지원금 지급(제21조), 거주지 보호(제22조), 신변보호(제22조의2), 교육지원(제24조)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업무,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됨.

- 통일부는 현재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을¹⁾ 각각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9월말 기준 신변보호 담당관 741명, 거주지 보호 담당관 245명, 취업보호담당관 71명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화천 분소에서 3종 담당관에 대한

1)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훈령 제697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취업보호담당관」이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신변보호담당관」이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²⁾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대상을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거주지 보호(제22조), 신변보호(제22조의2) 업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 또한 다양하므로, 향후 교육 대상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는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돕는 종사자들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며, 현재도 통일부 하나원에서 3종 보호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법안이 마련된다면 그 중요성을 관계부처에도 강조할 수 있고 더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67

2) (2025년 교육계획) 탈북민 보호담당관 3회 90명(30 x 3회) 대상 실시 예정(3·5·9월[2박3일])

* 최근 4년간('21~'24년) : 21년 3회 67명, 22년 3회 70명, 23년 3회 63명, 24년 3회 73명